

# 2021년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본 공고는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LH에서는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 모집호수(모집인원) : 전국 단위 400호(400인)
- 입주대상 주택 : LH가 보유 중(또는 보유 예정)인 청년 매입임대 주택
- 신청기간 : 2021. 2. 1(월)부터 모집호수 도달시 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6년 거주가능)</li> <li>*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li> </ul>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로 공급하며, 공급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은 지역별 신청 장소에 문의</li> <li>•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li> <li>-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li> <li>☞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6,670원)</li> </ul> </li> </ul>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평일 10:00 ~ 17:00,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절차



### ■ 예비입주자 등록

-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지역의 신규 매입(재건축)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등록 신청단위는 시·군·구 단위입니다.(예 : 경기 수원시 / 충북 단양군 / 서울 마포구)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또는 마지막 순위로 변경)
-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 지역 내 타 시·군·구로 예비입주자 등록 이관이 가능합니다.

\* 단, 예비자 이관시 입주 대기 순위는 이관될 시·군·구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 처리

### ■ 기타사항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신청단위(시·군·구)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3

## 제출 서류 안내

■ 제출하실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전에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 <b>본인</b>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li>*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li> </ul>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li> <li>(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li> </ul>	신청자 작성 (제출양식①)
보호종료아동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퇴소자</b>)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②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 증명서(행정복지센터) 중 한가지 서류</li> <li>(<b>퇴소 예정자</b>)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각서(공고문 하단 첨부, 제출양식③)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입주시까지) ③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입주시까지)</li> </ul>	공고문 하단 양식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작성 (제출양식③)

### 4

## 기타 유의사항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보건복지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 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 중인 자(계약자 포함)</li> <li>-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자</li> </ul> </li> <li>*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입주관련 (기금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li> </ul>
<p>재계약 자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li> <li>-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li> <li>•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주택을 반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음.)</li> </ul>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빌트인 제품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빌트인 제품 분실 발생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li> <li>• 동(棟)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li> <li>•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li> <li>• 동일주택에 2인 이상이 입주시 주택(공동거주형)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li> <li>•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LH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li> <li>•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li> <li>•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li> <li>•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합니다.</li> <li>•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li> </ul>

## 5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LH콜센터 (☎1600-1004)

### ■ 공급대상지역별 신청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서울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4층	02-2182-2703
	광진, 마포, 은평, 강북, 종로, 중구, 성동, 중랑, 성북, 서대문, 도봉, 노원, 용산, 동대문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0층	02-6454-2711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02-3416-3777
경기	강동 하남, 양평	LH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A동 2층	031-622-2713
	의정부, 포천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031-822-4025 031-822-4026
	양주, 동두천, 연천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963-1 한길프라자2, 5층	031-822-5513
	남양주, 가평, 구리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	031-590-6681
	고양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명진프라자 1002호	031-956-1024
	파주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031-934-5632
	부천, 광명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6층	032-450-8253
	시흥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능곡동 750) 3층	031-362-7712
	수원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안효빌딩 11층	031-323-9129
	안양, 의왕, 안산, 군포, 과천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031-467-5728 031-467-5707
	광주, 성남	LH 성남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야베스밸리 11층	031-778-3101 031-778-3100

	용인, 이천, 여주	<b>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b>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25-6(중동) 주네브스타월드 9층	031-280-4735
	화성	<b>LH 화성권주거복지지사</b>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플라자 4층	031-831-2465
	오산	<b>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b>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031-377-9434
	평택, 안성	<b>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b>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031-8094-5027 031-8094-5030
	김포 강화	<b>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b>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031-8048-5322
인천	남동구, 중구, 연수구, 옹진	<b>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b>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032-717-5249 032-717-5224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b>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b>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34 에이스빌딩8층	032-717-8532
부산	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b>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b>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BN빌딩 3층 (※ 주차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요망)	051-460-6921~ 2
	서구, 북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중구, 동구, 연제구,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b>LH 부산서부권주거복지지사</b>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빌딩 3층	051-460-5937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b>LH 울산사업본부 주거복지사업부</b>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	052-932-4821
강원	강릉, 동해, 양양, 속초, 삼척, 태백, 정선, 고성	<b>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b>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46 한국토지주택공사 2층	033-610-5165
	원주, 횡성, 영월, 평창	<b>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b>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033-737-7712
	춘천	<b>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b>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 주거복지사업부	033-258-4146
충북	청주	<b>LH 충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b>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8층(예정)	043-901-4530 043-901-4791
	충주, 제천, 음성	<b>LH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b> 충북 증평군 중앙로 88 농협홍삼 관리동 3층	043-820-9130
대전	서구, 중구	<b>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b>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4층	042-470-0866
	유성구, 대덕구	<b>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b>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더그린2차) 1층	042-470-0200
	동구	<b>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b>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	042-349-4610
충남	논산, 보령	<b>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b>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041-854-8359
	서산, 당진, 공주	<b>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b>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041-538-5823
전북	전주, 완주	<b>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b>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6층 매입임대	063-230-6185
	군산, 익산	<b>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b>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063-840-0927
	정읍	<b>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b> 전북 정읍시 중앙로 56(금오빌딩) 4층	063-570-2319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나주	<b>LH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b>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그랜드타워 4층	070-4171-4034

	광산구, 영광	<b>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b>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우산행복주택 상가동 3층	062-441-2986
	북구	<b>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b>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11-5	062-410-1924
전남	담양	첨단행복주택(H-3)상가 2층	
	목포	<b>LH 목포권주거복지지사</b>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 트윈스타(2층)	061-983-3321
	여수, 순천, 광양	<b>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b>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60(kt북순천지점3층)	061-900-4333
대구	남구, 북구, 서구, 중구, 칠곡	<b>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b>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053-210-8315
	달서구, 달성군	<b>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b>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5층)	053-610-9923 053-610-9925 053-610-9926
	동구, 수성구 경산	<b>LH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b>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053-960-3627
경북	구미, 김천	<b>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b>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054-450-3831 054-450-3830
	안동, 영주, 상주	<b>LH 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b>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166 한양빌딩 3층	054-851-9932
	경주, 포항	<b>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b>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명선빌딩 2층 (세명기독병원 부근 기업은행건물 2층)	054-280-4763
경남	김해	<b>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b>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국민은행 장유지점 옆	055-907-8132
	진주, 통영, 사천, 거제	<b>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b> 경남 진주시 술밭로 121(상대동), 씨티프라자 2층	055-922-1542
	창원, 밀양	<b>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b>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15 LH공사 2층	055-210-8514
	양산	<b>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b> 경상남도 양산시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2층	055-362-7254
제주	제주, 서귀포	<b>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b> 제주시 전농로 100호(삼도1동 305-4)	064-720-1033 064-720-1035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 <a href="http://www.LH.or.kr">www.LH.or.kr</a> ) → 청약센터( <a href="http://apply.LH.or.kr/">http://apply.LH.or.kr/</a> )

2021. 1. 20.



한국토지주택공사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수요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추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제출양식②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필수 제출)]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퇴소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인가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퇴소 사유	
-------	--

상기 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장

직인

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 각서

본인은 현재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로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령 취지를 감안 해당 주택의 입주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증명서)를 제출하고 입주할 것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입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명 :

생년월일 :

신청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